

IGSE 청강생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8. 08.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강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청강생’이라 함은 본교 석사과정에서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입학) 청강생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학과 의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입학할 허가한다.

제5조(수강기간 등) ①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수강은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일부 교과목은 수강과목에서 제외되며, 수강신청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 및 취득학점) ①청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출석 시수의 30%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향후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졸업생의 경우 학점당 300,000원, 일반인의 경우 학점당 500,000원으로 한다.

②수강료는 매학기 초 수강신청 후에 납부한다.

제9조(청강취소) 청강 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자는 청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기준을 당해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